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마 리 나 항 만 의 조 성 및 관 리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은 마리나선박의 종류에 대해 동력·무동력 선박, 등록·무등록 선박을 망라하여 규정함으로써, 마리나항만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마리나선박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현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대상지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제한되어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라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마리나선박의 개념을 마리나항만 이용 선박 현황에 맞도록 정비하고, 예정구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마리나선박 개념 개정

마리나선박을 관련법에 따라 등록·검사를 받은 동력레저기구와 해양레저·스포츠용 선박으로 정비하여 무등록·무동력 선박은 제외

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등 삭제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려는 자가 스스로 사업성 등을 판단한 적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규정을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
11. 「선박법」과 「선박안전법」에 따라 등록·검사를 받은 선박 중 해양스포츠 또는 해양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근지역의 도시”를 “도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개발사업의 현황

제8조를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마리나선박) 법 제2조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마리나선박) ----- ----- ----- -----.
1. <u>모터보트</u>	<u><삭 제></u>
2. <u>고무보트</u>	<u><삭 제></u>
3. <u>요트</u>	<u><삭 제></u>
4. <u>윈드서핑용 선박</u>	<u><삭 제></u>
5. <u>수상오토바이</u>	<u><삭 제></u>
6. <u>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u>	<u><삭 제></u>
7. <u>카누</u>	<u><삭 제></u>
8. <u>카약</u>	<u><삭 제></u>
9. <u>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선박</u> <u>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u> <u>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u> <u>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u> <u>되는 선박</u>	<u><삭 제></u>
<u><신 설></u>	10.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검사를 받은 동력수상 레저기구
<u><신 설></u>	11. 「선박법」과 「선박안전 법」에 따라 등록·검사를 받 은 선박 중 해양스포츠 또는

<u>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u> <u>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사항”이란 마리나항만</u> <u>예정구역의 위치를 말한다.</u> 1. <u>삭제</u> 2. <u>삭제</u> <u>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u> <u>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마리</u> <u>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u> <u>(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u> <u>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u> <u>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u> <u>제6조(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u>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 조사에는 <u>마리나항만 예정구역</u> <u>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다음 각</u> <u>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생략) 2. <u>인근지역의 도시, 인구, 관광</u> <u>수요, 교통 등 인문·사회적</u> <u>현황</u> 3. ~ 5. (생략) 6. <u>해당 구역 및 지역을 대상으</u>	<u>해양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선</u> <u>박</u> <u><삭제></u> <u><삭제></u> <u>제6조(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u> ① ----- ----- <u>다음</u> ----- ----- -----. 1. (현행과 같음) 2. <u>도시</u>----- ----- -- 3. ~ 5. (현행과 같음) 6. <u>개발사업의 현황</u>
--	---

<u>로 하는 개발사업의 현황</u> 7.·8. (생략) ② ~ ④ (생략) <u>제8조(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u> <u>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로 본다.</u> <u>1. 삭제</u> <u>2. 삭제</u>	7.·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삭제></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연 락 처	(044) 200 - 5255